

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85호
- 발 의 자 : 이해경 의원(찬성자 11명)
- 발의일자 : 2018년 2월 13일
- 회부일자 : 2018년 2월 19일

## 2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는 다수의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사용되는 복식은 정확한 고증과 재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수행 시 한복 등 전통 복식이 사용될 경우, 복식 고증과 재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복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장의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 고증과 재연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예산배정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  
(안 제6조의2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 5.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사용되는 복식의 고증과 재연을 활성화하고, 시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복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전문가 참여와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하도록 제안됨.
- 우리 위원회는 이혜경 의원(중구2, 자유한국당)의 제안으로 2017년 ‘복식(服飾) 고증을 통한 전통문화행사 재연방안 연구’ 용역을 시행하였고,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의 전통 문화행사 및 축제에서 복식과 관련한 문제점을 다수 발견하였음.

- **남이장군사당제** : 남이장군 갑옷 및 군병들 복식이 18세기 이후 군복으로 재현되어 조선 전기 의복과 일치하지 않음
- **세초연** : 관리들이 착용한 단학 흥배는 조선 후기의 형태로 공작, 학, 모란, 구름 등의 모양이 들어갔어야 함
- **정조대왕 능행차** : 정조의 복식이 구간별로 상이해 한 인물로 보이지 않고, 혜경궁 홍씨의 붉은 복식은 검증이 필요함
- **관악 강감찬 축제** : 출정 행렬 인원 중 현대 의복(선글라스, 양복 바지, 워커)을 착용한 사례가 있음

이에 따라 동 연구는 ① 시대 복식 연구를 토대로 정확한 고증을 통해 의상을 제작하고 ② 행사 출연자들의 사전 교육 및 전통 복식 전문가의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며 ③ 축제 복식의 철저한 수선 및 보관으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안하였음.

- 한편 서울시는 2016년 7월부터 우리 위원회 이혜경 의원의 발의로 우리 민족 고유의상인 한복의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에 기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시행 중에 있음.

동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상기 연구용역 결과 취지를 감안하여 복식의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통한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의 개최가 복식 문화가치의 회복 및 전통문화 계승·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음.

## 안 제6조의2 현행 및 개정안 비교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고유명절 및 주요행사) 시장은 설날,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	제6조(고유명절 및 주요행사) (현행과 같음)
< 신 설 >	제6조의2(전통문화행사 및 축제) 시장은 <u>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정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- 안 제6조의2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시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하도록 전문가 참여 및 적정 예산 배정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고증을 통한 정확한 복식의 제작·교육·관리를 전인하므로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서울시 문화본부는 동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, 조례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동의함을 밝힘.

한편, 우리 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동 개정안 이외에도 서울시의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서 역사적으로 정확한 복식 재연을 위해 사업 입찰시 ① 공고 및 과업지시에 복식 재연 적정가격과 복식 전문가 참여를 명시하는 방안, ② 심사위원 구성 시 복식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, ③ 심사기준에 복식 고증 및 재연 전문 참가자(업체)를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음.